

충청북도중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월 3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중평문화회관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 규정 중 일부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문화회관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규정 구체화
  - “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”
  - ⇒ 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”로 함.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중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12조 제3호의 경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심의결과 자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조정하도록 심의 받은 사항으로서,

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,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,

- 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”함은, 이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삭제 또는 규칙 등으로 명문화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중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